

기금운용심의회규정

제정 : 2018.10.

개정 : 2020.1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각종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매 회계연도 「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」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단, 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교원·직원 및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「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5제4항」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- ④ 제2항의 교원·직원, 학생 및 동문 위원 위촉은 교수회, 직원회,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(개정 2020.12.22.)

제4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.

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회의록)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·장소·토의내용·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3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실무위원회) ① 기금운용의 투명성,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투자관리 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실무위원회(이하 ‘실무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. 단,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
제9조 (관계부서의 협조)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무관장)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